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의 연 나이 적용 도입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0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의 연 나이 적용 도입 (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24.

다. 회 부 일 : 2026.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의 연 나이 적용 도입(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등급 분류 기준(12세·15세 이상 관람가)에서 연령 산정 방식을 ‘만 나이’에서 ‘해당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생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 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 ---- <u>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u> ----

현행	개정안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 ---- <u>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 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 · ②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분류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 ---- <u>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 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u>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 ---- <u>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 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9조 및 제50조¹⁾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을 전체관람가,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비디오물의 경우 제한관람가)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9조제4항²⁾은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 ⑩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 ~ ⑦ (생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제2호: 12세 이상 관람가, 제3호: 15세 이상 관람가

그런데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을 이른바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완화하여 동일 학년 내 생일에 따른 불합리한 관람 차별과 극장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겠음.

다만,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³⁾으로 2023년 6월부터 법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었는데, 개정안과 같이

3)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관람등급을 연 나이로 완화할 경우 또다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봄.

한편, 현행법 제29조제4항⁴⁾은 12세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입장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부모 등 보호자’에 친권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즉 교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⁵⁾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안의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연 나이 기준 도입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기 관람이 가능해져 청소년 보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방송, 게임 등 다른 콘텐츠 관련 법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콘텐츠 간 기준 불일치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